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 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으로 한다.

제22조본문중 “필요한 기간” 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

제26조의2중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 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 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93 1280 617 1733"> <thead> <tr> <th>근속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8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1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 <tr><td>5년이상</td><td>20일</td></tr> </tbody> </table> <p>②(생략)</p>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p>제10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 <u>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u></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 <u>(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u></p> <p>-----</p> <table border="1" data-bbox="739 1280 1163 1733"> <thead> <tr> <th>근속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8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1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 <tr><td>5년이상</td><td>20일</td></tr> </tbody> </table> <p>②(현행과 같음)</p>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현행	개정안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u>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③-④ (생략)</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 ----- -----제26조의2의 <u>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u> -----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필요한 기간</u>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4. (생략)</u></p>	<p>제22조(공가) ----- ----- ---- <u>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u> ----- ----- 1. - 3. (현행과 같음) <u>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u> <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u>휴가기간</u>의 범위내에서 <u>도지사에게 신고하고</u>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6조의2(국외여행) -----<u>휴가기간</u> <u>의 범위내에서</u> ----- -----</p>

현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자녀	1	
	<u>형제자매</u>	1		<u>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u>	...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회갑
	본인및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처)	1	출산
사망	배우자	7	사망
	본인및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3	
	<u>형제자매</u>	3		<u>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u>	...
	<u>백숙부모</u>	3		<u>본인및배우자의 백숙부모</u>	...
탈상	배우자	2	탈상
	본인및배우자의 직계존속	1	
	<u>형제자매</u>	1		<u>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u>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 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